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홍보책자 발간

건설교통부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제하의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2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7. 3. 1 부터 특급 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에 꼭 필요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 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금년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

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어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홍보책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될 계획이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 ☞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붙임 : 홍보책자(“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 : 홍보기획팀

연락처 : 기술정책팀, 사무관 박선규 021-2110-8769

집 살 때 건축물대장 확인해보세요

건축물대장규칙의 전면개정에 따른 대민서비스 개선

□ 건축물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의 관리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전산화되어 보다 손쉽게 등록, 이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의 등기정보와 연계된 소유권 변동정보는 물론 건물용도, 위법건축행위 등 건축물 관련 주요 내용이 함께 표시되므로 건물을 살 때는 꼭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07.1.16)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의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2월 1 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정보’ 참고

□ 개정안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생성, 전환·합병, 소유자·지번 변경 등의 사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대장관리의 정보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해당지자체의 건축물 대장에 자동적으로 변동사항을

반영케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일반 민원인이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 홈페이지 혹은 전자정부 민원포탈 등을 통해 자유롭게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지만, 이중평면도는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안장치를 별도로 두었다.

□ 또한,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위반내용, 시정사항 등이 기재되므로 건물을 살 때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2006년 현재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총 886,435동이 적발되고 이 중 713,516동이 시정되어 **172,932동(전체 640만 동의 2.7%)이 위반상태로 남아 있음.**

□ 참고로, 5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2007년 12월까지 전국에 보급될 예정인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대장규칙을 통한 건축물대장의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건축 인

허가 기간이 단축(60일 → 15일)되고, 민원처리절차가 투명화 되는 등 대민서비스의 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붙임>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

붙임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 일반건축물대장

- 대지에 관한 사항
 - 대지 위치(지번 및 건물명칭), 대지면적, 용도 지역·지구·구역, 배치도(지적도를 바탕으로 대지의 경계, 건축선, 대지안옥의 주차 현황, 대지를 출입할 수 있는 도로), 관련지번
- 건축물에 관한 사항
 - 평면도 및 각 층의 평면도, 옥내 주차현황,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구조, 지붕의 구조 및 형태, 높이,

- 용도, 부속건축물 현황, 승강기, 오수정화 시설
- 건축물의 소유자 현황
 - 소유권 지분 및 변동내역
- 건축관련 사항
 -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 및 시공자, 건축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 표시

□ 집합건축물(공동주택)대장

- 일반건축물대장에 추가하여 알 수 있는 사항
 - 건축물현황 : 건축물의 전체 현황
 - 호명칭, 총 호수, 총 주차가능대수
 - 공유부분과 전유부분 표시
 - 부대 복리시설 현황(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7. 1. 16)

- 공공택지내 종전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36(벽식구조) 고시(9.9)

-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07.4.20)前的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 받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에 활용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9월 9일 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는 지난 '05년 3월 9일(전용면적 85㎡이하)과 '06년 3월 9일(전용면적 85㎡초과)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 공공택지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07년 9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07년 12월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 ☞ '07년 9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신청분과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신청분은 8월 6일 고시된 새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됨
-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는 기본형건축비가 처음 고시된 '05.3.9일=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벽식구조 1.036, 라멘 구조 1.045, 철골구조 1.051이다.
- 건설공사비 지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시세와의 괴리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등의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매 6개월마다 탄력적으로 조정·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 9월 9일 이후에는 '05.3.9 최초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에 이번에 고시하는 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
- 건설공사비 지수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인건비·자재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조사하였다.
 - ※ 공동주택 투입품목 약 1,000여개 중 공사비에서 1/10,000 이상 차지하는 362개(건축비의 98.6%) 물가변동을 분석
 - ※ 분양가=[(기본형건축비+지하층건축비)×공사비지수]+지하층건축비 외 가산비용+택지비
- '07.9.9일 이후 종전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공사비지수를 적용하는 때에는,
 - 소형주택(전용 85㎡이하)의 경우, 최초의 기본형건축비가 '05.3.9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당해 지수를 그대로 적

용하면 되나,

- **중대형주택**(전용 85㎡초과)의 경우에는 최초의 기본형건축비(06.3.9고시)가 '05.9.9일까지의 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산정되었으므로,
 -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에서 '05.3.9~'05.9.9일까지의 지수 변동분을 제외한 상승률(벽식구조 3.3%, 라멘구조 4.2%, 철골구조 5.3%)만을 적용하게 된다.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내역

구분		'05.3.9	'05.9.9	'06.3.9	'06.9.9	'07.3.9	'07.9.9
건설	벽식구조	1	1.003	1.005	1.015	1.025	1.036
	공사비	1	1.003	1.004	1.023	1.033	1.045
지수	철골구조	1	0.998	0.997	1.027	1.038	1.051

- 이번 건설공사비지수를 **최근에 지수가 고시된 시점('07.3.9)과 비교**하면, 벽식구조는 1.1%, 라멘구조는 1.2%, 철골구조는 1.3% 각각 상승한 것이다.
-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07.9.9일 이후 적용되는 실제 기본형건축비를** 산정해 보면,

- ※ 소형주택은 11~20층 이하의 60㎡~85㎡이하 규모를 기준으로, 중대형주택은 11~20층 이하의 105㎡~125㎡이하를 기준으로 예시
- (**소형주택**) 1,028천원/㎡×벽식 1.036≒1,065천원/㎡
 - ※ '07.3.9 기준 1,054천원/㎡
- (**중대형주택**) 1,013.9천원/㎡×벽식 1.033?1,047천원/㎡
 - ※ '07.3.9 기준 1,036천원/㎡
- ⇒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에는 부가세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약 1,151천원/㎡
-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지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 개정('07.9.1 시행)된 現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지난 8월 6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되며,
- 이번에 고시된 건설공사비지수 및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는 종전의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7. 9. 7)

지진 대책 차질없이 추진

-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 앞바다에서 9월12일~13일 양일간 **3차례 리히터 규모8.2~7.7**의 강력한 해저지진 발생으로 사망 10명, 백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건물붕괴와 전력·통신이 두절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구의 판구조론에 의한 판 경계선상에서 벗어나 있어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되고 있으나,
- 우리나라 지진 사례를 보면 **1978년 홍성지진(규모 5.0)이후 현재까지 리히터규모 5.0이상**의 지진이 **5건이나 발생**되고 중소규모 지진이 간헐적으로 발생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 건설교통부는 '78년 홍성지진 후 추진한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 '95년 일본의 고베지진 이후 **리히터 규모6의 지진에 대비**한 시설물 **내진설계 대상의 확대** 및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시설물 보강 등 내진대책을 시행해 왔다.
- **댐과 공항 43개소(100%)와 터널, 교량 88%(10,537개소)가 내**

진반영이 완료 되었고, 금년에는 교량 207개소를 보강 중에 있으며 나머지 **1,189개소는 201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 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 22개노선 중 5개노선은 내진반영 되었으며 미반영 17개노선은 201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붙임 : 내진설계기준 및 내진보강대책

붙임 내진설계기준 및 내진보강대책

1. 국내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 : 규모 6.0 내외 (평균)
 - 댐(05년, 6.0~6.3)
 - 건축물(88년, 5.5~6.5)
 - 철도·고속철도(91년, 5.7~6.4)

- 수문(05년, 5.7~6.3)
- 공항(04년, 5.5~6.5)
- 터널(85년, 5.7~6.3)
- 교량(92년, 5.7~6.3)
- 공동구(04년, 5.7~6.3)
- 지하철(05년, 5.7~6.3)

뉴얼을 발간·배포, 건축주 스스로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유도 함.

- '07. 5월 건축물에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지침 을 제 정시행

2. 내진보강대책

- 철도의 터널 40개소와 교량 286개소는 '07년까지 상세평가 결 과에 따라 대책 수립할 예정이며
- 미반영된 지하철 17개 노선에 대하여는 '07년까지 정밀실태 조 사를 실시 후 '08년부터 내진보강 시행예정으로 '12년까지 보강 예정임.
- 건축물은 '05. 7월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6층, 1만㎡→3층, 1천 ㎡) 시행하고 소규모 건축물도「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06)」매

시설물	대 상	내진반영	보 강 계 획			비 고
			합계	'07계획	'08~'10	
• 터널	712개소	656	16	-	16	40
- 철 도	281	225	16	-	16	40
- 도 로	431	431	-	-	-	-
• 교량	11,221개소	9,881	1,054	207	847	286
- 철 도	954	615	53	7	46	286
- 도 로	10,267	9,266	1,001	200	801	-
• 댐	28개소	28	-	-	-	-
• 공항	15개소	15				
• 지하철	22노선	5	17	-	17	(12까지)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7. 9. 14)

회원정보(등록, 변경) 안내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원정보(등록, 변경) 안내

한 글		한 자	영 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화번호	이동전화	
	주 소 (-)		
직 장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		
E - Mail			

20 년 월 일

※ 작성하신 후에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해 주십시오.
Fax : (02)566-4729 / E-Mail : ksea@ksea.or.kr